

대선과 경제위기에 실종된 인권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들어가며

'문민정부'가 사실상 막을 내린 97년 하반기에 인권문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경제위기로 인해 뒷전에 가려졌다. 우리는 '문민정부'가 종착역에 다가갈수록 인권의 후퇴현상이 폭력화되고 있음을 경계해왔다. 이런 폭력화 경향은 대선 시기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런 예측은 불행히도 맞아 떨어졌다(합본 8호 머리글 참조).

하지만, 이런 결론으로 97년 하반기의 인권 정세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선거에서 50년 현대 정치사에서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런 정치사적 의미를 훨씬 압도하는 IMF 구제금융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여야간 정권교체는 최근에 들어와 밝혀지듯이 안기부의 계속되는 북풍공작을 넘어 레드 콤플렉스와 지역감정의 최대 희생자인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가 야당 생활을 하면서 뿌려놓은 개혁적인 이미지와 그가 내놓은 민주적 개혁 공약으로 인해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보수 일색의 정치판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내걸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재심제도의 확대, 변호인 참여권의 확대 등의 사법절차의 개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복지공약 등은 사실 인권단체들이 인권개선책으로 수없이 제기해온 것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의 당선이 소수 야당세력의 정권 획득을 위한 지역연합에서 출발하였고, 그 세력들은 과거 군사정권과 유신, 성장지상주의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란 점, 무엇보다도 김대중 씨 자신이 기득권 내부의 소외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개혁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양보했던 본질적인 내용들 중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이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는 조항도 삽입되었으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삶의 질 확대라는 공약 뒤에는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의 우선 순위 배정이라는 일견 모순적인 조항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그 역사적, 정치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내놓은 기본적인 사항들마저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본격화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98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0만 명의 실업자가 양

산되리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권교체가 갖는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다. 자칫 사회 전체가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민주적 가치, 기본적 인권들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식의 잘못된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97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위기가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이미 세계화가 절대다수의 빈곤층을 형성하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적'이란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금융자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은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함에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매우 어려운 처지다. 결국 국제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오히려 억압적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견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사회권적 요구는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때 인권운동의 임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98년의 상황은 바로 이런 인권운동의 임무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97년 하반기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97년 하반기 진행된 인권상황을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후퇴

97년부터 시행되었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인신구속제도의 일대 혁명적인 조치였다고 우리는 평가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되자마자 검찰과 법원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변질되고, 급기야는 시행 1년만에 변질, 후퇴하는 운명을 맞았다.

이 제도가 가져올 인권증진 효과는 97년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97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 전국 평균 영장 기각율은 19.11%로 96년 같은 기간의 7.4%에 비하여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96년에는 56,454명이 구속되었으나 97년에는 37,142명이 구속됨으로서 구속인원이 전년보다 34.2%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관행을 견제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일보전진을 가져왔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97년 11월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는 검찰의 승리로 끝난 것이었다. 대다수의 언론은 이 문제를 단지 법원과 검찰의 밥그릇 다툼인양 보도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했다. 인권단체들도 사실 이런 후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심문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개정 전 제도를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원할 때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보호라고 강변했지만, 사실은 '수사효율'을 앞세워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었다.

물론, 97년 하반기에는 이런 인권보장제도의 후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의 불법 불법 심검문에 대해 최초로 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것은 기억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11월 27일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판사는 “외관상으로도 원고의 가방 속에 휴기가 없음이 명백해 가방을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원고가 가방을 열 때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강제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조항들을 재확인한 것일 따름이지만, 아직도 불법 불심검문의 관행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의미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2. 벼랑에 내몰린 생존권-노동, 철거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급기야 11월부터는 가파른 환율 평가절하와 증권시세의 하락이 나타났고, 이어 12월 3일 굴욕적인 IMF 긴급구제금융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60년대 경제성장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저 성장률, 저 임금, 고실업, 고금리로 대표되는 IMF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97년 10월 실업률 2.1%(실업자 45만 1천명)이던 것이 11월에는 2.6%(57만 4천명), 12월에는 3.1%(65만 8천명)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98년 들어 본격화돼 실업자는 2백만 명을 웃돌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재벌은 계속적으로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 갈 것이지만, 고실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설사 대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새 정부측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외자유치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법제화로 노동자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귀결된 경제상황은 그리잖아도 궁지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옥죄는 구실을 했다.

8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부도기업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는 것이었다. 즉,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이제 노동자들은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97년말까지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못박았다.

이는 체불임금이 97년 상반기에만 6만 6천여 명의 노동자에 1,529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부도율도 크게 높아졌던 현실과 빈약하기 그지없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당장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무시였다.

한편, 안산 한국후포구와 대전 한국타이어의 문제는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원시적 폭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대량실업문제에 늘려서 제대로 해결되

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한국후포구 노동조합은 6월부터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했고, 급기야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 현지에서 “일본 후포구(사장 가와모토)의 성실한 사태해결, 한국후포구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도 전개했다. 현지에 건너간 윤동만 위원장 등 3명은 12월 13일 동경시내의 동경탑에 올라가 이런 요구를 주장하다가 전원 연행되었고,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강제출국당했다. 결국 일본원정 투쟁을 끝낸 뒤 지리한 후포구 농성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후포구 노동조합에서의 용역강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 업무평가를 빌미로 한 부당징계와 해고, 해고자를 도운 여성에 대한 보복강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타이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8월 23일, 민주노총의 증재로 회사측과 노동자측은 △10월까지 해고자 7명 복직 △손해배상소송 철회 △쌍방계류중인 고소사건 취하 △복직후 일주일 내 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합의를 악용하여 회사 문제에 대한 비방을 금하고,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노조민주화운동을 하던 해고자들마저 지방으로 분산 복직되면서 노조민주화운동의 토대가 와해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거기에 청주지검은 한국타이어와 연관된 성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이 사건은 회사측의 수사를 받은 조직 폭력배들이 당시 해고자를 돕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불러왔으나,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런 암담한 현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철이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포항제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의 민영화 추진, 정리해고제의 법제화 추진 등등으로 노동자의 생존 조건은 1월 총파업 이후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들도 국내 노동현실의 악화에 따라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97년 5월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8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진일보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곧 반전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끈질긴 로비에 따라 9월 경제장관 회의는 고용허가제를 포기하고, 현행대로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12월에 들어와서는 급기야 경제위기를 이유로 98년 3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모두 떠나라고 독촉하고 나섰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계층은 비단 노동자들뿐만이 아니었다. 민중계층은 거개가 다 이런 고통 속에 놓여 있었다. 특히 철거민은 이런 원시적인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었다.

7월 25일 동대문구 전동 3동에서는 철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과정에서 박순덕 씨가 사망하고, 9명의 주민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9월 30일에는 성동구 행당동 1-2지구 재개발 지구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주민 30여 명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주먹과 돌등으로 폭행당했다. 12월 16일에는 용산구 도원동에서도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강제철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 들어서 철거현장에서는 철거강패가 철거업무를 대행하고, 재개발업자와 시한을 정하고 계약한 철거용역업체는 기간 내에 철거를 마치기 위해 무리한 폭력마저 불사했다.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의 수준은 이미 인간성을 저버린 만행이었다. 이런 철거용역업체의 대표적인 곳이 적준용역이다. 전농동·행당동·도원동 등 철거폭력의 현장엔 언제나 적준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적준용역은 서울시

재개발사업장의 50% 이상을 입찰과정에서 따내는 거대용역업체로 그 뒤에 정치권과의 결탁 설 등이 돌 정도다.

또한 이런 마찰이 구청과 경찰의 방관 또는 방조 속에 진행된다는 데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청은 철거민들과의 가이주단지 설치를 서면으로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기 일쑤며, 경찰은 철거폭력을 보호하기라도 하는 듯이 철거현장을 병력으로 에워싸고 주민들의 보호 요청도 묵살한다. 이에 따라 철거폭력은 재개발시행사업자와 철거용역업체, 구청, 경찰이 짜고 자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아시아주거권 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단장 박문수 신부)은 행당동 철거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10월 16일 1차 조사보고서를 국내외 인권단체 및 주거권 관련 기관에 보냈고, 10월 18일에는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앞으로 피해주민 진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내의 강제철거의 진상은 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3. 공안당국의 한총련 죽이기: 자치권마저 짓밟힌 대학

“당초 제5기 한총련 조직은 전국 206개 대학(4년제 146, 전문대 60)이 가입, 지구총련 의장급 이상 핵심지도부 43명을 포함한 1,658명의 중앙조직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지난 5월 30일 이후 ‘한총련 이적·폭력행위자 검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탈퇴를 적극 유도한 결과 9월 25일 현재 한총련은 지구총련 의장급 이상 핵심지도부 43명중 33명과 중앙조직원 미탈퇴자 등 총 489명 검거, 319명 구속 206개 가입대학중 160개 대학(4년제 100, 전문대 60개)과 중앙조직원 1,658중 1,333명이 탈퇴하였습니다.”(97년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내무부 답변)

하반기의 공안탄압은 한총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와해작전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했다.

7월 22일 대검 공안부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혔으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6월 25일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부 부장검사)는 한총련 출범식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기로 했으며,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는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7월 30일 안기부, 경찰, 기무사, 교육부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희 대검공안부장)는 한총련 미탈퇴 대학생 7백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한총련 와해의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한총련 수배 학생들을 연행한다는 빌미로 경찰은 대학에 마구잡이로 진입해 대학을 유린했으며, 검거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7월 21일 충남대학교에 오전 6시경 수송차량 2대와 승용차 10여 대를 동원한 대전 북부경찰서 소속 전경 및 경찰 1백여 명이 학내로 들어가 학생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 30명(2명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13명 훈방조치)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기 8발을 발포했다. 그리고 7월 22일엔 성동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 1백 여명이 한양대 학생회관까지 들어가 부총학생회장 신신호(23, 행정학과) 씨 등 5명을 연행했으며, 8월 19일 강화도 삼척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수련장을 급습해 이 학교 총학생회장 정시철(정의과 94) 씨를 연행했으며 몸싸움 중 경찰이 학생들에게

권총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9월 4일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던 목포전문대생 장제훈 씨등 5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완섭 순경(목포경찰서 소속, 이후 경장으로 특진)은 1인당 3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했으며 9월 16일에는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27) 씨가 경찰의 기습검거를 피하다 추락사하는 사건이 터져 경찰의 검거방법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각 대학측에 한총련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 본부에 직접 압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대학당국도 공안회오리에 편승해 기존의 학생자치영역을 잠식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건국대 학보사의 경우 ‘한총련 탈퇴여부와 구속학생 소식’을 개강호 1면 톱기사로 실리자, 학교측은 “이적단체 관련 기사를 1면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신문배포를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대에선 △한총련 주취 시위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할 것과 △총학생회 간부, 대학신문사 기자, 동아리 회장의 한총련 간부직 겸임 불허 △이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 및 부직 알선 제한 △수익사업 금지 △플래카드·대자보 임의부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면학분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안’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고 이 종합계획안은 교육부 지도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좌익합동수사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한총련 와해의 결과 폭력시위 혐의로 총 4,184명(618명 구속, 757명 불구속, 836명 즉심, 1,966명 훈방, 7명 이첩)이 연행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454명이 검거, 362명이 구속되었다. 96년 연세대 사태에 이어 다시 학생운동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학생운동은 극심한 분열상에 직면하게 된다.

4. 문화예술·학술의 탄압부터 양심수 논쟁까지

한총련 문제에서 승리를 만끽한 공안세력은 그 먹이거리를 문화예술과 학문의 분야에서 찾았다. 어느 신문의 지적처럼 검찰 공안부는 소리없이 공안몰이를 시작했다.

11월 4일,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체포·구속은 그 시작이었다. 서준식 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레드 헌트」는 97년 4월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도 본선진출작이었음에도 상영이 취소되었던 문제작이었다. 하지만, 인권영화제 직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두 번이나 상영되었음에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9월 18일 동성애 영화제인 퀴어영화제를 원천봉쇄하기에 이르렀다. 여름에는 만화와 문학작품에 대해서 작가를 입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이에 대한 문화인들의 대대적인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대학가 서점에 배포한 혐의로 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 이민재 씨와 도서출판 이웃 대표 정우창 씨 등 3명과 논장서점 대표 이재필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11월 25일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통일원 추천도서이기도 한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 1세대』를 문제삼아 저자와 출판사인 (주)천재교육 편집부장 김지화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7조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이 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하자 12월 29일 불구속 기소해 버렸다. 그러나 광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저자인 광주대 박지동 교수는

영장이 발부되어 11월 29일 구속되었다.

현직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구속 사건은 실질적인 공안 주도세력인 검찰 공안부가 지식인 사회에 대해서까지 이적성을 들이댄 것으로 학계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그러나 검찰의 공안몰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1월 29일 대검찰청은 교육부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린 유홍준 교수의 월출산과 남도의 봄 등 모두 8명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의 글이 교과서에 부적절하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고은, 신경림, 유홍준, 이강백, 채만식, 김기림, 정지용, 이영도의 글에 대해 글의 내용보다는 작가의 성향이나 글에 숨겨진 의도 등에 중점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에 한 술 더 떠 학위 논문들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였고, 심지어는 국방부 정훈교재마저 시비를 걸었다.

이런 일련의 지식인 사회에 대한 공안몰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의도적인 공안 분위기 연출이란 성격이 짙다. 즉 '대선 정국과 함께 경제불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파고들면서 '매카시'적 광풍을 일으켜 공안부서의 입지를 넓히려는 기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은 통신공간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7년 1월부터 7월까지 컴퓨터 통신 아이디(ID) 사용정지와 폐쇄건수가 3,02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96년 1년치 2,413건보다 많은 것이었다. 9월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4개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이용자 61.6%가 자기검열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이 결국은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낳은 결과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양심수 문제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김대중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의 10월 31일 광주의 토론회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을 집권하면 석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야당 후보의 발언만은 크게 문제삼은 것으로 김 후보에 대한 색깔 덧칠하기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특정후보에 대한 색깔론 차원에서 제기된 양심수 논쟁은 양심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양심수가 과연 얼마나 구속되어 있는지, 왜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에서조차 정부가 한사코 존재를 부인하는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지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다.

97년 하반기 자유권과 관련해 주목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보안관찰법에 의한 출소 양심수들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91년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법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외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보안관찰법에 의한 제한 조치가 형벌이 아닌 예비적 행정조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공안사범을 그 주대상으로하며 이들이 출소한 뒤 사생활을 경찰에 살살이 보고하고, 사회생활을 제약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보장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

서준식 씨의 구속 사유 중에 보안관찰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비롯해 9월 함세환(출소비전향 장기수·전쟁포로)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11월 방양균(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복역출소) 씨가 출소신고등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를 당했다. 문규현 신부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보안관찰법은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도, 공안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그 혐의를 적용시킴으로써 사회활동에 커다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 긍정과 부정

△ 7월 16일,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96년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5개 법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이상수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백 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의장)의 행위는 청구인(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날 날치기 통과와 권한침해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국회는 권한침해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 즉 안기부법을 재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기부법 등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를 들어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

△ 7월 16일,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1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여성 부분에서 다름).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 7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범민련 남쪽본부 중앙위원 강순정(67)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97년 1월 이 조항에 대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거나 누설시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기밀로 보호해야 할 실질적 가치가 없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확대 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인권개선에 부정적인 결정도 내렸다.

△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김기수 검찰총장과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8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증립화 방안의 하나로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의 퇴임 뒤 공직취임 및 당적 보유 금지는 무산되고 검찰총장은 퇴임 뒤 곧바로 장관 등의 공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한 검찰 불기소에 항의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80년 신군부의 쿠데타 과정에서 '사회정화'라는 명분아래 인권유린을 당한 6만 여명의 삼청교육피해자들에게 법률구제와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

이와 같은 결정들은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결정처럼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7월 24일, 전 동독군 장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심판 최종판결에서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린 것은 "동독에서도 인정됐던 기본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국가이익이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의 이익보다 인권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과단성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때 우리 사회의 인권은 한층 밝을 것이다.

6. 전자주민카드: 공권력의 개인 비밀 장악 기도

97년도 하반기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끊임없는 공세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들간의 힘겨루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면서 사태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입장을 가져왔던 김대중 씨의 당선을 통해 상황은 반전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찬)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안기부와 경찰이 이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겠다고 보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관련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152억원을 들여 주전산기와 자료처리기를 사들이는 등 모두 480여억원을 탈법 집행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 정권에 들어선 현재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유보 상태지만, 아직 그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7. 여성: 한발 진전을 이룬 남녀평등

97년 하반기는 가부장제에 도전하며 남녀 평등을 위해 싸워온 여성운동 단체들과 피해 여성들의 투쟁이 커다란 결실을 맺은 시기였다. 그 동안 여성운동 단체들은 남녀평등의 기본이 되는 법률의 제·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7월 16일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또한 같은 달 30일에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11월 4일에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게도 한국인 국적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여성 인권 향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많은 일이 산적해 있으며, 좋은 법을 만

들어 놓는 것보다 그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요청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1) 동성동본 혼인금지 파기

동성동본 금지혼인은 91년 개정된 가족법에 여전히 존재해온 호주제와 함께 남자쪽 혈통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다.

이에 대해 95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동성동본 부부들이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하게된 뒤 2년여 동안 유림의 격렬한 반발 등 갖가지 논란이 빚달치듯 오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범위를 남자쪽 혈통에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의 위반'이고, '실제 약 20여만 명의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수많은 남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현실과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풀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과제가 남아 있다.

2) 성폭력특별법 재개정

93년 12월 17일 제정돼 9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 3년만에 재개정되었다.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가중처벌을 받게된 것과 친고죄가 폐지되어 제3자도 고소할 수 있게 된 점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에서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해 의붓 아버지 등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된 점 △장애인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해 정신장애인의 피해도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등을 담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보다는 정조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 데다, 13세 이상의 여성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않은 점등은 다시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3) 국적법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국적법 논란이 9월 19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 그 자녀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96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 6만8천여 명, 불법체류자 12만9천명, 합법취업자 1만3천명을 포함해 모두 21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편중심주의'에 입각해 아버지와 남편의 국적위주로 자녀와 처의 국적이 정해졌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으로, 자녀는 '사생아'로 되어 합법적인 학교입학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는 한국이 비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국적 취득·변경 또는 보호에 있어 남녀평등이 명기되어 있는 점과 선진국가들이 대체로 부모양계주의에 입각해 국적법이 남녀평등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녀 차별적인 국적법의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11월 4일 정부는 기존 국적법을 개정해 동성동본 혼인과 더불어 남녀평등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4) 가정폭력방지법

지난 11월 18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 동안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률 중 가정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이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 가정의 문제로 인식해 이웃이나 신고를 받은 경찰조차도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되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으며, 남편들도 살해를 당하는 등 큰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그 동안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며, 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한 점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할 것과, 만약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관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한 점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사회봉사과 피해자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등이다.

이제 이 가정폭력방지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일과 더이상 가정내 폭력이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 기타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구성

97년 대인지뢰금지조약의 체결과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민간단체의 영향력을 증명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한반도 등 64개국에 묻혀 있는 1억1천만개의 대인지뢰와 전쟁을 선포하였다.

국내에서도 이 평화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모여 11월 6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를 발족하게 되었다. 지뢰회의는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며,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시민행동 조직 △조디 윌리엄스 등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운동가 초청 캠페인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에바디농아원 1년 넘기도록 해결 요원

97년 11월 27일로 강제노동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시작된 평택 에바디 농아원생들의 농성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당국은 손놓고 있고, 재단쪽 사람들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가운데 농성자들의 요구는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에바디 농아원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평가 소홀, 이사장의 친인척이 독점한 폐쇄적 운영, 그로인한 시설 내에서의 인권유린과 형편없는 처우 등 우리나라 시설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 전국에 메아리 친 북한동포돕기-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반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1백억 원의 성금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씨 망명사건,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 등의 악재로 8월 들어 주춤하는 듯 했으나, 97년 하반기에도 종교·시민·여성 단체 등 각계각층의 운동본부에는 동포돕기의 정성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식량지원에 그치지 말고 의약품, 농자재 등의 필수품지원과 중장기적인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간활동은 모금만이 아니라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한 중국 현지 조사단이 파견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대북지원에 대해 정부가 취해온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규제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근거로 거리모금을 금지한 것과 모금운동에 영향력이 큰 기업과 언론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었다. 이에 민간단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규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간과 정부의 대북지원 태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 사건이 12월 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연변 등에서 북한식량실태를 조사하며 직접 식량을 전하는 활동을 벌여온 '통일강냉이' 회원들은 13명의 식량난민들과 7000km의 목숨을 건 장정을 함께 하게 된다. 구사일생으로 중국~베트남 국경을 건넌 노력도 헛되어 생사를 같이한 북한식량난민이 한국대사관의 외면으로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통일강냉이는 이들의 한국송환을 위한 호소에 나섰고, 국민들의 질타에 당국은 뒤늦게야 이들의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 울산 '부부간첩'사건에서 발단한 북풍

선거 때마다 간첩사건이 터졌듯이 97년 하반기에도 간첩사건이 발생했다.

"10월 2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으로 정대연(36) 집행위원장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다방에서 정씨를 만난 두 남자는 '북에서 왔다. 공화국에 같이 가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정씨는 이들과 헤어진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0월 27일 정씨는 그들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들은 약속장소에 나왔다가 잠복중인 안기부·경찰 합동팀에 의해 검거됐다(시사저널 11월 13일자)."

이들 울산 간첩의 입에서 나왔다는 고정간첩 등 10여 명의 이름은 대선용 북풍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켰다. 11월 20일 안기부의 부부간첩단 사건과 '고정간첩 고영복, 심정용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은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안기부는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보도통제를 깨뜨린 언론에 대한 경고성 비난 발언을 하였다. 이외에도 대선에 가까워오면서 오익제 편지, 재미교포 윤홍준 씨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안기부는 끊임없이 북풍을 시도했지만, 정보를 장악한 야당의 발빠른 대처를 깨지 못했다.

△ 안기부 물고문 재연

10월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나창순(65)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7월 안기부에 연행되어 20여 일 간 조사 받으면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나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신 수사관 7명이 자신을 눕혀놓고 얼굴에 폭포처럼 물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씨는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러졌다는 것이다. 나씨는 물고문 직후 이에 대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나씨는 조국통일법민족연합(법민련) 남측본부의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일본의 법민련 사무국에 전달했다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훼손된 역사의 심판; 진·노 석방

12월 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남아있는 형집행을 면제받고 옥문을 나서게 되었다.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단행했다는 특별사면과 복권은 12·12, 5·18 사건 관련자와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관계자에게 줄줄이 선사되었다. 4월 17일, 대법원이 12·12, 5·18사건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내린지 8개월 5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 서울지법, 한미행협 위헌제정; 미군 공여지 재산권 침해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 김석규씨 등은 자신들의 땅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용사용권의 존재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그간 주한미군 당국은 이 지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부동산이므로 주한미군에게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격장을 건설한다며 폐장갑차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을 받아들인 서울지법은 11월 26일,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호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열악한 재소자 처우; 한총련 여대생 자비부담 하혈 치료/광주 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재소자 수용시설 내의 의료 처우가 빈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외부진료에 의존해야 하고, 외부진료를 허락받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병을 키우게 된다. 요행히 외부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본인부담이 당연한 것이라면 과연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소자가 얼마나 될는지 염려되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 10월 7일 성동구치소에서 발생했다. 한총련 관련 구속자 전행란 씨는 수감 중에 심각한 하혈 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외부진료는 본인 부담이어야 하며, 구치소 수감 중 발병한 병이 아니므로 구치소 소관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병이 아닌 감옥에서 악화된 병이며, 입원은 가족도 모르게 이뤄진 것이었고, 감시 교도관으로 인해 강요된 특실 사용료까지 물어야 하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달 광주교도소에서는 소내 양심수가 포승줄로 묶인 채 폭행당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곧 이어 관련 양심수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되고 징벌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재소자 접견 요청을 했으나, 교도소 당국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접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문민’의 후과와 인권운동의 과제

‘문민정부’를 자처했던 김영삼 정권이 맥없이 그 개혁 기초를 잃었을 때 사회 전반에 부상한 것은 신공안정국이었다. 94년 신공안정국이 서슬 퍼렇게 전개된 이래 한국에서의 인권은 이미 그 개선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나마 개혁 과정을 통해 획득했던 조치들의 후퇴였다. 안기부법의 개악이 그렇고, 노동법 개악이 또한 그랬다.

전반적으로 인권상황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과거청산도, 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인권교육도, 사회권의 확대도 이루지 못했다. 결국은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럼 인권운동은 무엇을 했는가’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고민으로 또는 헌신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은 이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정권 하에서 우리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사실 김영삼정권 하에서 인권운동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무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미 사회적 관심은 다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도 저변을 확대했지만 인권운동의 관심은 한정된 자유권적 주제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런 가운데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론조차 조성하지 못했으며, 신공안정국 이래 조성되었던 매카시 선풍도 잠재우지 못했다. 터져 나오는 사건들의 뒤쫓기에 바쁜 나날들을 보낸 것이 인권운동이 아니었는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결합하여 한 사건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낸 모범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기도 한 올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권과제들이 등장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세계화’로 포장된 ‘경쟁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적이란 것을 깨달았다면, 올해는 이 적에 대해 싸우는 방법을 깨우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실업에 따르는 근본적인 생존의 위기,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금융자본의 약탈과 착취의 합법화에 다름 아닌 각종 투자협정들이 가져올 민중들의 절망적인 생활수준으로의 전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황을 누리려는 미국에서조차 노동자들이 70년대 수준의 생활로 후퇴하였고, IMF를 극복한 멕시코에서조차 3백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다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경제위기 해결 우선 논리에 따라 자유권적 기본권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가.

아직 우리의 인권운동은 이런 물음에 대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기존의 자유권 중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부진했던 한국의 인권운동이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 놓기에는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마당에 언제까지 사회적 영역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

사회권의 영역에서 노동이면 노동, 빈민이면 빈민문제에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권을 사회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확립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자유권의 후퇴를 막아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런 고민과 헌신이 있고서야 한국의 인권운동은 다시 현 정권이 막을 내릴 때 인권운동이 무엇을 했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인권문제가 소수의 관심사가 아닌 대중적인 관심사로 확대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현실이 인권의 가치를 조롱하면 할수록 인권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은 더욱 절실해져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끝-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제915호 - 제1035호)

1998. 4.

인권운동사랑방